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42
----------	-----

2025. 6. 11.  
경제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30. 강남구청장(위생과)

나. 상정의결

-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1.)  
“ 수정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보건소장 이종철 )

- 202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행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영업자의 정의 정비(안 제2조)

나.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 출납원 등 변경(안 제5조)

다. 관련 법령에 맞추어 심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조항 정비 및 신설  
(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라. 그 외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5. 4. 11. ~ 2025. 5.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주현 )

### 가. 개정 취지 및 배경

#### ○ 「식품위생법」 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최근 개정은 2023년 7월에 이루어졌는데, 그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은 수차례 개정되어 용어 정의 등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음.

#### ○ 식품진흥기금 운용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령<sup>1)</sup>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징수하는 과징금과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구성됨.

1)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진흥기금 조성 자원 >

-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 그 밖의 수입금
- 기금 운용 수익금
- 과징금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 **영업자**로부터 징수)

- 강남구는 2000년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 후 운용해왔는데 2023년도부터 매년 집행액이 증가하고 연도말 조성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나. 검토 내용

○ 정의 규정 정비

- 해당 조례 현행 제2조와 안 제2조의 ‘영업자’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에서 확인해보면, 현행 제2조제1호에서는 상위법령에 정하여진 시설기준 및 영업종류 규정에 충족하는 자를 영업자로 보았으나, 이번 개정안 제2조제1호에서는 상위법령 제37조의 영업허가 규정에 충족하는 자를 영업자로 보았음.
- 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조문에 이미 용어 정의가 되어 있고, △해당 상위법령에서 영업자를 폭넓게 정의하여 조례에 정의한 용어는 그 범위 내에 당연히 포함되어 그대로 적용되며, △기금 조성 재원에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영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과징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업자의 범위를 실제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영업자 용어 정의 >**

조례 개정 전	<p align="center"><b>식품위생법</b>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p> <p><b>제36조(시설기준)</b>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 ...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align="center"><b>식품위생법 시행령</b>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73호]</p> <p><b>제21조(영업의 종류)</b>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p>	<p align="center"><b>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b> [시행 2023. 7. 7.]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839호]</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 align="center"><b>식품위생법</b>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8호]</p> <p><b>제37조(영업허가 등)</b> ① ... 영업을 하려는 자는 ... 영업 종류별</p>	<p align="center"><b>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b> [2025년 개정안]</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현행 법령	<p align="center"><b>식품위생법</b>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8호]</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p>	<p align="center"><b>현행 법령에 따른 개념 정의</b></p> <p>“영업자”</p> <p>「식품위생법」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b>영업허가</b>를 받은 자</li> <li>•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b>영업신고</b>를 한 자</li> <li>•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b>영업등록</b>을 한 자</li> </ul> <p>「건강기능식품법」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소분·조합·수입·판매하는 자: <b>영업허가</b> <b>영업신고</b> <b>영업등록</b></li> </ul>
	<p align="center"><b>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b> [시행 2025. 1. 3.] [법률 제20138호]</p> <p>지방자치단체는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소분·조합·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 관리</p>	

- 위 도표에서 확인한 내용과 같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법령 개정 때마다 조례를 정비하는 불편을 줄이고 △입법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

**< 정의 규정 비교 >**

현 행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839호]	개 정 안 [2025년 개정안]	수 정 의 건
<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말한다.

**< 용어 개념 범위 >**

“영업자”		
「식품위생법」 • 법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별 {시설기준} 및 {영업종류}	「식품위생법」 • 법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별 {영업허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 각 법률에 규정된 영업자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

**○ 기금 출납원 지정**

- 식품진흥기금의 출납원을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의 사유로 조례를 빈번하게 개정하지 않아도 되고, 기금 업무 담당이 기금 출납원 업무를 맡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임.

**다. 종합 의견**

**○ 상위법률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이 조례안 정비 내용(제1조·제3조·제5조부터 제6조의5까지) 상당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것이며 타당하다고 보임.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1.)

- 질 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기금  
    용자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 답 변 : 모범음식점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이 한 20개 정도 됨. 2028년  
    7월자로 모범음식점 인증 제도는 종결 예정이며, 이후에는  
    위생등급제로 통합되어 관리 될 예정임

## 7. 토론 요지

- 규정의 정확성과 입법경제성 도모를 위해, 제2조 정의 조문의 관련  
    법령 명시 방법을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관련의안번호

제542호

발의일자 : 2025. 6. 11.

제안자 : 경제도시위원장

## 1. 수정이유

- 정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상위법령에서 정의하는 범위와 일치하고 입법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 범명 규정을 수정함

## 2. 수정내용

- 정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상위법령에서 정의하는 범위와 일치하도록, 근거 범명을 추가하여 명시하도록 수정함(안 제2조제1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로 한다.

##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u>구청장이</u> 모범업소로</p>	<p>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 제89조----- <u>서울특별시 강남구민</u>----- ----- ----- ----- -----.</p> <p>제2조(정의) ----- -----.</p> <p>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2. ----- ----- <u>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u></p>	<p>(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정의) ----- -----.</p> <p>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말한다.</p> <p>(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5. “대여”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여”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과 같음)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 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 법 제89조 제2항 각 호-----.	(개정안과 같음)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②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를 포함한다)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	② ----- 다음 각 호----- -----. ----- ----- ----- 「서울특별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정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기금출납원: <u>식품위생팀장</u></p> <p>③ (생략)</p> <p>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u>아니한</u>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p> <p>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u>기금업무 담당 팀장</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않은</u> -----</p> <p>-----</p> <p>-----</p> <p>-----</p> <p>-----.</p> <p>제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p> <p>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p> <p>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p> <p>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한다)를 둔다.</p> <p>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p> <p>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p> <p>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p> <p>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1. <u>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u></p> <p>2. <u>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u></p> <p>3. <u>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5급 공무원</u></p> <p>④ <u>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⑤ <u>심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생과 식품위생팀장이 된다.</u></p> <p>⑥ <u>심의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으로 의결한다.</p> <p>⑦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6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p> <p>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p>	<p>제6조의2(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p> <p>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④ 삭제</p>	<p>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p> <p>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p> <p>3.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속 5급 공무원</p> <p>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p>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p>	<p>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p>	<p>(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다.</p> <p>1.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p> <p>2. <u>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u></p> <p>3. <u>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4. <u>제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p> <p>&lt;신설&gt;</p>	<p><u>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p>1. <u>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p> <p>2. <u>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u></p> <p>3. <u>위원이 제6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u></p> <p>4. <u>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u>제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p>	<p>(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lt;신설&gt;</p>	<p>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제6조의 5(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p> <p>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p>	<p>(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u></p> <p><u>1. 제6조 각 호의 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u></p> <p><u>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u>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⑤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u>⑥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u></p> <p><u>⑦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89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구민”을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말한다.
5. “대여”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법 제89조제2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금사업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팀장”을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2(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속 5급 공무원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위원이 제6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장에 제6조의4 및 제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심의회 의 의결을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5(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6조 각 호의 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u>구청장이</u>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p> <p>3. 4. (생략)</p> <p>5. “대여”란 서울특별시 강남구</p>	<p>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 제89조-----            -- <u>서울특별시 강남구민</u>-----            -----            -----            -----            -----            -----            -----.</p> <p>제2조(정의) -----            -----.</p> <p>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말한다.</p> <p>2. -----            ----- <u>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p> <p>3. 4. (현행과 같음)</p> <p>5. “대여”란 구청장이 서울특별</p>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은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④ ----- 않은 -----  
-----  
-----  
-----  
-----  
-----.

제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5급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생과 식품위생팀장이 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심의회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삭 제

제6조의2(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

체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속 5급 공무원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위원이 제6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신 설>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5(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

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6조 각 호의 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42
----------	-----

제출연월일: 2025. 5. 30.  
제출자: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위생과

## 1. 제안이유

조직개편 시행과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영업자의 정의 정비(안 제2조)
- 나.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 출납원 등 변경(안 제5조)
- 다. 관련 법령에 맞추어 심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조항 정비 및  
신설(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 라. 그 외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11. ~ 2025. 5.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89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구민”을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대여”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법 제89조제2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금사업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팀장”을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2(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속 5급 공무원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위원이 제6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장에 제6조의4 및 제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심의회 의 의결을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5(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6조 각 호의 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u>구청장이</u>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p> <p>3. 4. (생략)</p> <p>5. “대여”란 서울특별시 강남구</p>	<p>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 제89조-----            -- <u>서울특별시 강남구민</u>-----            -----            -----            -----            -----            -----            -----.</p> <p>제2조(정의) -----            -----.</p> <p>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2. -----            ----- <u>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p> <p>3. 4. (현행과 같음)</p> <p>5. “대여”란 구청장이 서울특별</p>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은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④ ----- 않은 -----  
-----  
-----  
-----  
-----  
-----.

제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5급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생과 식품위생팀장이 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심의회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삭 제

제6조의2(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

체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속 5급 공무원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위원이 제6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신 설>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 5(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6조 각 호의 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4. 작성자

- 위생과 지방행정서기보 권혜윤(02-3423-7075)

